



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997. 2. .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1997년 2월 4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1. 제 안 이 유

기부금품모집 규제법('95. 12. 30) 및 동법시행령('96. 7. 1)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

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 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

기금출납원을 당초 농산물유통계장에서 농정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### 2. 주 요 골 자

가. 기금의 조성규정을 시의 출연금, 이자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함.

나. 기금출납원을 농정계장으로 변경함.

### 3. 검 토 의 견

본 안건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됨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

원칙으로 하고있어 이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출납원을 당초 농산물유통계장에서 농정계장으로

변경하려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